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등〉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3)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V. 검토의견	3
1.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안 제11조의2)	3
2.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	8
3.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시행(안 제17조)	11

※ 참고자료

1.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추진경과	16
2. 기념일 현황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3.
3. 회부연월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하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IV. 검토의견

1.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안 제11조의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¹⁾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를 설립하는 자</u> 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 ----- ----- ----- <u>학교를 설립하는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u> ----- ----- ----- -----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설립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중 군인 자녀 대상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운영할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3월 국방부는 교육부와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²⁾

이는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 가족의 자녀가 3년간 전학 걱정 없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음.³⁾

특히,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실태조사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서 주거환경(40.5%)에 이어 자녀교육이 24.6%로 군인자녀 교육여건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국방부 보도자료, 2024년 3월 8일 배포.

3)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음에 따라,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자녀를 둔 군인가족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표> 직업군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제도	· EBS 멘토링 · LG U+ 아이들나라	· EBS 멘토링 · 삼성 드림클래스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 대학 특별전형
재정·환경	· 군 관사 작은도서관	· 군 가족 힐링캠프 · 중·고교 3학년 자녀를 둔 군인의 근무지 이동시 군 관사 퇴거 유예		· 학자금 대부 · 호국장학금 · 꿈도전지원금 · 기숙사 지원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2024년 3월 8일 배포) 일부 편집

□ 자율형 공립고는 농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의 협약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모델 운영을 통해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임.

자율형 공립고의 한 유형인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군인가족의 자녀를 위해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⁴⁾

4) 국방부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9개 학교에서 유치 의사를 확인하였음.

특히,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하여는 일반 공립고에 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매년 1억원) 및 해당 교육청 지원예산(매년 1억원)⁵⁾으로 학교당 2억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교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어 교육감이 임용하게 되며, 교원도 100%까지 초빙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한 교장과 교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는 군인자녀 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여 교육감이 선발할 예정이며, 학교 소재 광역지자체 거주 일반 학생들도 함께 선발할 예정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가의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잦은 전학과 격오지에서 성장하는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군인들의 중장기 복무를 독려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서 교육감이 공립의 고등학교

5) 교육청 지원예산 1억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공립고 2.0’에 따른 교육청 대응투자 1억원임.

중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정의 주체는 교육감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제2호는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경영함.

또한, 법제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율형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⁶⁾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하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 주체와 운영 주체 및 법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군 매점 상품 등에 대한 재판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

개정안은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이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 ①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 매점 및 군 마트 등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⁷⁾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다수 상품 등을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부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와 그 가족 등이 해당 시설에서 구매한 대량의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마켓이나

7)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재판매업체 등을 활용하여 재판매하는 등의 거래행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재판매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용대상을 군인 및 군인가족 등으로 한정해놓은 「군인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중에 비하여 저렴한 군 매점 등의 물품이 일반 시장으로 적지 않게 유입되어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⁸⁾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⁹⁾ 등에 따라 현역장병 및 군무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군 매점 등의 물품을 적지 않게 재판매하는 경우 적발 시 징계 등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명시적인 재판매 금지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판매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¹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자’는 심의를 통해 군 마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심의를 통해 제재에 들어간 인원은 2023년말 기준 1명(2021년)에 불과함. 국군복지단은 그동안 이러한 재판매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 각 마트에 개인별 적정량 구매 안내에 대한 홍보 ▲ 화장품류 제품 외부 포장에 ‘군 마트용’ 표기 ▲ 납품업체 요구 시 개인별 1일 판매수량 통제 등을 시행함.

□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매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 선례도 있음.

**<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재판매
금지 규정**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따라서 개정안은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 등의 재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재판매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판매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3.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시행(안 제17조)

개정안은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매년 국군의 날¹¹⁾ 전(前)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하고(안 제17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같은 조제2항),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같은 조제3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7조(군인 가족의 날) ①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가족의 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11) 10월 1일.

□ 군인가족¹²⁾은 군인의 잦은 격오지·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 등에 따라 육아 등 가사를 혼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잦은 이사로 인해 자녀 교육에도 애로가 있으며 친지·지인과의 교류도 쉽지 않은 등 국가안보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여야 하는 희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군인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군인가족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매년 국군의 날 전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 기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안보는 군인과 더불어 군인가족들이 감당하는 희생과 어려움이 바탕이 되고 있어 그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에서 인정과 격려,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다만, 법안 심사시에는 ① 현행 ‘국군의 날’이 국군장병의 사기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사기 고취의 방안에는 군인가족 예우도

12)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념일에 군인가족을 격려할 수도 있는 점,

② 군인 외에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의 경우 가족을 예우하는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된 선례가 없으며, 미국¹³⁾ 외에는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현재 각종 기념일이 이미 190여개에 이르는 상황¹⁴⁾을 고려할 때 기념일 추가 지정의 실질적 선양 효과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 시행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군인가족을 위한 기념일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 기념일을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국경일¹⁵⁾에 대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현재 기념일과 관련된 기본법은 부재하므로 개별법을 통한 기념일 지정이 가능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을 근거로 55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고, 이외에 산재된 개별법에서 135개 기념일을 각각 정하고 있음.¹⁶⁾

13)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1984년 이후 매년 5월 어머니의 날(둘째 주 일요일) 전 금요일을 ‘군인 배우자의 날’로 정하고 대통령의 공식 연설, 올해의 군인 배우자상 수여, 선물 제공 및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14) 현행 기념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기념일 현황】 참조.

15) 해당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모두 5개임.

16) 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기념일을 포함한 전체 기념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업무수행 및 국회 입법절차를 통한 민의 수렴 등을 위해서는 기념일 전반에 대

둘째, 현행법 규정 및 타 기념일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① 기념일 명칭을 ‘군인V가족의 날’에서 ‘군인가족의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이 ‘군인가족’을 정의¹⁷⁾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인V가족의 의미가 법률상 기 정의된 용어인 ‘군인가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② 개정안은 기념일 날짜를 ‘국군의 날 전(前)주 금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떤 기념일의 날짜를 다른 특정한 기념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9월 넷째 금요일’과 같이 날짜를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안심사 일정에 따라 2024년부터 곧바로 기념일 행사를 시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 제17조제3항과 같이 구체적인 기념사업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를 「부대관리훈령」에 규정¹⁸⁾하여 2024년부터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바, 향후 국회 법안심사 일정과 국방부의 구체

한 일반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17)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18)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개정 진행 중이며 행정규칙 예고(2024.7.29~8.12.), 법무심사 의뢰(2024.8.14) 등의 절차를 거쳤음.

적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2024년 법정기념일로서
‘군인가족의 날’ 행사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추진경과

□ 배 경

○ (국방부) 잦은 전학과 격오지에서 성장하는 군인자녀교육 여건 개선

○ (교육부) 공교육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 국방부-교육부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MOU 체결('24. 3월)

□ 추진 경과

○ '24. 4~5월, '군인자녀 자공고' 지정·설립기준 정립 및 군인자녀학교 수요조사

○ '24. 5~6월, 군인자녀학교 희망지역 및 학교 유치 의사 확인(6개 지역, 9개 학교)

* 경기(평택), 강원(화천·춘천), 경북(영천·상주), 경남(진해), 충남(계룡·논산), 전남(장성)

□ '군인자녀 자공고' 운영 방안

○ (학생모집) 군인자녀 전국단위, 민간자녀 학교 소재 시·도 지역에서 선발

○ (학생비율) 군인자녀의 비율을 50% ~ 80%(한민고 70%) * 전 학생 기숙사 지원

○ (교원) 교장은 공모제를 통해 임명, 교사는 100% 초빙 가능

○ (학사운영·교과과정) 무학년제, 조기졸업 등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자율성 부여

○ (예산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1억), 교육청 대응투자(1억)로 학교당 2억원 지원

□ '군인자녀 자공고' 지정·설립 기준

① 지자체·교육청·학교 참여 의사

② 기숙사 * 보유 여부 또는 신·증축 가능성

③ 학생 수용 규모 (1개 학년): 150 ~ 330여명

④ 우수교원 모집 여건

⑤ 지역(학교)의 명분 및 상징성

⑥ 접근성 (교통 편의성)

① 지자체·교육청·학교 참여 의사

- 역할·권한의 분산으로 3개 기관 참여 제한 시, 자공고 지정(설립) 제한

- * 지자체: 설립 및 운영지원(예산 등)

- * 교육청·학교: 학교 설립계획, 학교 운영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② 기숙사: 군인자녀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보장을 위한 필수시설

③ 학생 수용 규모(1개 학년): 150 ~ 330여명

- 군인자녀 학령인구(5.8천명) 대비 10~15% 수준을 정원으로 판단(325~615명)

- 학습여건 보장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고려, 2~3개 학교 지정 추진

④ 우수교원 모집 여건: 학생 양성 및 명문고 도약을 위한 전제

- * 교사 인센티브 부여, 관사 제공, 교감 선발 시 가산점 등

⑤ 자공고 지정 시, 지역(학교)의 명분 및 상징성

- 군인자녀들이 지정(설립)된 학교의 선발·모집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로 지역과 교육발전의 상생효과 발휘 가능한 곳

⑥ 접근성: 학생·교사들의 외출·외박 후 복귀, 출·퇴근 시 교통 편의성 등

출처: 국방부 제출자료

2. 기념일 현황

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4. 5.21)에 따른 기념일: 55개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 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 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 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 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4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5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6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7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8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29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30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1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2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3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4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5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고,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7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8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39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40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행사를 한다.
41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2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대회 개최와 더불어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3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5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46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7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48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49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5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국가보훈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51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2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3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4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산업 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비고

-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 제5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나. 개별 법률에 근거한 기념일: 135개 (2024. 3월 기준)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25.1.10. 시행예정
16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7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8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9	도서관 주간	4.12.~4.1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1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2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3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4	청소년의 달	5월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5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26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27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근거법령 등
28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29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0	유권자의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1	유권자 주간	5.10.~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2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3	한부모가족의 날	5.10.	여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4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36	입양주간	5.11.~5.17.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37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38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39	가정의 날	5.1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0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1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2	세계인주간	5.20.~5.26.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3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4	문화다양성 주간	5.21.~5.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5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6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47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48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9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0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 (6.5.)이 포함된 1주간	환경부	환경교육법
51	구강보건의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52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53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54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근거법령 등
55	해양조사의 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56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57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58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9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0	사회적기업 주간	7.1.~7.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61	협동조합의 날	7월 첫째 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62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63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64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65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4.8.9. 시행예정
66	인구의 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67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68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69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70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71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7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8.14.	여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73	양성평등주간	9.1.~9.7.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74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75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76	여권통문의 날	9. 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77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78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79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80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근거법령 등
81	사회복지주간	9.7.~9.1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82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83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84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85	자살예방 주간	9.10.~9.1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86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87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8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89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90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91	청년주간	청년의날부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92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93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94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95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96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97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 25.1.3. 시행예정
98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99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00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01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02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03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04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105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06	호스피스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07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08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근거법령 등
109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111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5.1.24. 시행예정
112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3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14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15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16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17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18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19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20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21	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22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11.2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23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124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25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26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7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28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29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0	자원봉사주간	12.5.~12.11.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31	국가유산의 날	12. 9.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 ※ 24.5.17. 시행예정
132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4.7.31. 시행예정
133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4.7.31. 시행예정
134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5.1.3. 시행예정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근거법령 등
135	국악의 날	미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 24.7.26. 시행예정

자료: 행정안전부